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8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이오홀딩스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101조의2 등에 따라, 및 '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·광고 규제 위반' 및 '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'과 관련하여 각각 과태료 36백만원 및 과태료 24백만원(총 60백만원)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)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·광고 규제 위반

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, ①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②손실 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, ③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, ④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○ 주식회사 이오홀딩스는 ❶20xx.xx.xx. "금감원 산하 회사"라고 언급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으며,

○ ❷20xx.xx.xx. “6개월 누적 종합수익률 70% 미달인 경우 회비 전액 환불 보장”한다고 안내하는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고,

○ ❸20xx.xx.xx. “납입금 및 투자금에 대해 월 19.4% 수익률 법적 보호”된다고 안내하는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

2)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

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①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,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②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, ③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그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나,

○ 주식회사 이오홀딩스는 검사시작일(2025.11.14.)부터 검사종료일(2025.11.26.) 현재까지 자사 카페에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❶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, ❷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, ❸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102조의2